

의 안 번 호	제 호	의 결 사 항
의 결	2020. . .	
연 월 일	(제 회)	

혈 액 관 리 법 시 행 규 칙

일 부 개 정 령 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능후 (보건복지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 제 처 심 사 전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채혈금지대상자 단위를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에서 4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조정하고,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에서 8주, 두단위 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에서 16주로 조정하는 등 채혈금지기간 기준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기관 없음

라. 기 타 :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혈액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2 I 제3호가목2) 중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를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4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로 한다. 같은 호 나목1) 중 “예방접종을 받은 날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을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고, 제4호다목 중 “전혈 채혈일로부터 2개월을 전혈채혈일로부터 8주”로,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로 한다.

별표 4의2 중 “씨(C)형간염”을 “시(C)형간염”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1의2 I 제3호가목2)는 공포한 날로부터 1개월 후, 제4호다목 은 공포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

[별표 1의2]

채혈금지대상자(제2조의2 및 제7조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I. 공통기준 1. ~ 2. (생략) 3.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 가. 약물 1) (생략) 2)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1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 7) (생략) 나. 예방접종 1)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탄저, 공수병 예방접종을 받은 날부터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 3) (생략) 4.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 가. ~ 나. (생략) 다. 전혈채혈일로부터 2개월, 혈장성분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및 두단위	I. 공통기준 1. ~ 2. (현행과 같음) 3. 약물 또는 예방접종 관련 요인 가. 약물 1) (현행과 같음) 2) 이소트레티노인, 피나스테라이드 성분의 약물을 투여 받고 4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 7) (현행과 같음) 나. 예방접종 1) 콜레라, 디프테리아, 인플루엔자, A형간염, B형간염, 주사용 장티푸스, 주사용 소아마비, 파상풍, 백일해, 일본뇌염, 신증후군출혈열(유행성출혈열), 탄저, 공수병 예방접종 후 24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사람 2) ~ 3) (현행과 같음) 4. 진료 및 처치 관련 요인 가. ~ 나. (현행과 같음) 다. 전혈채혈일로부터 8주, 혈장성분채혈, 혈소판혈장성분채혈 및 두단위혈소판

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 백혈구 성분채혈 및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4개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 (생략) 5 ~ 6. (생략)	성분채혈일로부터 14일, 백혈구성분채혈 및 한단위혈소판성분채혈일로부터 72시간, 두단위적혈구성분채혈일로부터 16주가 경과하지 아니한 자라. (현행과 같음) 5. ~ 6. (현행과 같음)
--	---

[별표 4의2]

선별검사결과 부적격자에 대한 안전성 검사 및 판정기준(제7조의2 관련)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부적격 요인	안전성 검사 방법	부적격 요인	안전성 검사 방법
(생략)		(현행과 같음)	
씨(C)형간염	(생략)	시(C)형간염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생략)		(현행과 같음)	
비고(생략)		비고(현행과 같음)	

< 의안 소관 부서명 >

생명윤리정책과	
연 락 처	(044) 202-2949